

「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13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0(수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공무원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07.11.30.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 「공무원여비규정」 개정 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·시행키 위함임

나. 주요골자

- 군수의 여비 지급구분 기준 설정(안 제3조제1항)
 -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 적용→ 2~3급 일반공무원 수준
- 여비결재와 정산방법 등 공무원여비개정규정 준용(안제4조)
 -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 결재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 의무화
 - 1주일 내에 사용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공무원에게 정산신청 등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군수의 여비지급기준을 일반공무원 2~3급 수준으로 적용하고,
- 여비사용과 관련하여 운임과 숙박비는 자치단체 여비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며, 여행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도록 하고,
- 기타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조례문구의 자구수정 및 일부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배재하는 사항으로,

다. 결과적으로,

-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기존의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여비에 대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, 또한 사후 정산하는 내용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카드결제망의 한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용 출장 등 다양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업무수행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